

審 查 報 告 書

1995. 5. 30.
산 업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1995년 5월 20일 속초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5월 2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9회 속초시의회 (임시회)
제1차 산업위원회 ('95. 5. 30) 상정,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건설과장 김진목)

가. 제안이유

-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 규약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개량계 규약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,
-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22조에서 시장이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지사의 승인까지 얻도록 하고 있음은 법규정에 위배되어 폐지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농지개량계 규약을 조례로 정함은 위법임 (제6조)
- 농지개량계의 해산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위법임 (제14조 제1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-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1972. 1. 14. (속초시조례 제307호) 제정되어 그후 4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,
- '95. 2. 8. 강원도지사로 부터 본 조례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재의 요구지시에 따라 시장으로 부터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,
- 본 폐지조례안의 "제안이유"를 검토한 결과 관계조례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없 음

5. 討論 要旨 : 없 음

6. 修正案 要旨 : 없 음

7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8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 음

9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

첨 부 :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
1부. 끝.

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
번호

365

제출년월일

제 출 자 속 초 시 장

II. 제안이유

1. 농지개량계 규약을 조례로 정함은 위법함. (§ 제6조, § 별첨)

- 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농지개량계 등록시 규약을 첨부토록 하고 동 규약을 별첨으로 정하고 있는 바,
 -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제2항,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제정된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"규약"은 "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"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량계 규약을 이 조례에서 정하고 또한 수정의결 [규약 제16조(과태료)] 한 것은 법령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.
 - 따라서 본 규약을 조례로 정한 것은 법 제68조의2제2항,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4항,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됨.
- #### 2. 농지개량계의 예산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위법함 (§ 제14조제1항)
-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"시장은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예산확정을 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 - 농지개량계의 예산은 법 및령에 의원을 거쳐 제정된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22조에서 "시장은 예산확정을 규정하고 있으며" 이같은 도지사의 승인까지 필요할 것이 의결한 것은 법 제68조의2제2항,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4항,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됨.

결론 :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.